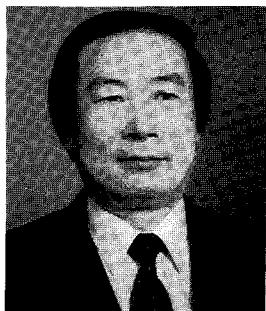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Ⅲ

글/김수복(한국노동연구소장, 국제대학교수)



(3) 안전담당자의 직무내용

안전담당자는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외에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 교육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제도의 의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직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2)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당해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대한 응급조치

④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⑤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동법 시행령 제10조)

(3)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보건관리자

(1) 보건관리자의 의의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보건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선임한다.

보건관리자는 일정한 규모 및 업종에 두어야 한다(동법 제16조).

(2) 보건관리자의 선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수 및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을 전달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직무

② 보호구종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⑥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 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⑦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⑧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전의

⑨ 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⑩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전의

⑪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법에 의한 의사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정관리기사 1급 또는 환경관리기사 1급(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정 관리기사 2급 또는 환경관리기사 2급(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⑥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6. 산업보건의

(1) 산업보건의의 의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조).

(2) 산업보건의의 선임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50인 당 월 1시간 이상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3) 산업보건의의 자격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4) 산업보건의의 직무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과 같다.

①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②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③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차금속산업,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2) 선임대상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② 제조업 중 제1차 금속산업

③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 중 선박건조 및 수선업

④ 기타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

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또는 중대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 유해·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검사에 의한 사용여부의 확인

(4)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일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동법 제19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

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② 산업보건의 1인(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8인 이내(건설업의 경우는 9인 이내)

④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인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 이내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④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변경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작성·변경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신고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22조).

VII. 안전보건관리규정

1. 작성·신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